

시민고충처리위원회(지방옴부즈만) 고충민원 처리사례

□ 민원 제목

「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건의

□ 신청 취지

- 양산시 동면에 소재한 상동체육공원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사용 허가 할 수 있는 조례규칙상의 근거도 없이 상동체육공원 조성 취지 등의 해석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우선 사용허가하고 있음
- 이로 인해 상동체육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과 외부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함에 이를 해소하고자 함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(사실관계)

- 양산시 동면소재 상동체육공원은 동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장기간 불편 해소 보상차원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”으로 2016년경 조성된 시설임

□ 판단 및 결론

- 시정권고
 - 「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동면 상동체육공원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인근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의결함
- 19.12.26 시행규칙 개정 완료

□ 민원 제목 :

「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건의

□ 신청 취지

-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(배출가스 5등급)를 조기 폐차할 경우 일정비율의 보조금 지원
 - 21년 이후부터 “비상저감조치” 발령시 노후경유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예정(1일 10만원)
 - 정부에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(90% 지원) 유도
 -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지침에 따른 조례개정에 있어 일부 지자체 자율적 결정권이 있어 경남도내 지원기준이 상이하고 양산시의 경우 기준 과다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주장(사실관계)

- 양산시는 「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시로 전입한지 2년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
 - 경남도내의 경우 2년이상 조건 있는 시군 6개소, 2년이상 조건 없는 시군 9개소, 조례 미제정 3개소

□ 판단 및 결론

- 시정권고
 - 사업목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제도개선권고의결함
- 20.12.24 조례개정 완료

